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99
----------	-------

발의연월일 : 2025. 7. 24.

발 의 자 : 조은희 · 서일준 · 김용태
이성권 · 서천호 · 신성범
박정하 · 서범수 · 이인선
조배숙 · 서명옥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등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선서를 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여 일부 결함이 있는 공직후보자의 지명 또는 임명이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대통령, 대법원장이 공직 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는 경우 국회에 그 사실과 이유를 알리도록 함(안 제6조제4항).
- 나.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 다. 자료제출의 대상을 공직후보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에 거부하는 기간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 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허위 진술의 죄를 규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 마.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에 대한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를 규정함(안 제16조의3 신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국회에 임명 또는 지명의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 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제12조제1항 중 “공직후보자”를 “공직후보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중지된다.

제16조의2·제16조의3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허위 진술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

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가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 위원회로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이 거짓 자료제출 또는 고의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2(고발) ① 위원회는 공직후보자가 제16조의2제1항 본문의 죄 또는 제16조의3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③ ~ ⑦ (생략)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신설>

<신설>

니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

-----공직후보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중지된다.

제16조의2(허위 진술의 죄) ① 이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가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 위원회로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이 거짓 자료제출 또는 고의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2(고발) ① 위원회는 공직후보자가 제16조의2제1항 본문의 죄 또는 제16조의3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

	<u>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u> <u>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u> <u>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u> <u>명의로 한다.</u>
--	---